

# '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추진 방향

<산업자원부>

## 목 차

### I. 주진 배경

### II. '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방향

### III.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

#### 과제 1. 전자상거래 법적 환경 마련

#### 과제 2. 수요자 중심의 세부시책 추진으로 수요창출

#### 과제 3.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(Infra) 구축

#### 과제 4. 전자상거래 이해 제고 및 마인드 확산

#### 과제 5. 국제협력의 강화

## I. 주진 배경

-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지식·정보기반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자상거래(Electronic Commerce)가 국가경제·사회의 변혁을 주도하는 수단으로 부각

- WTO, OECD, APEC 등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가 핵심적인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미국, EU 등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시책 추진

※ 전자상거래 국제 논의 동향

- WTO : 전자상거래 각료선언 채택('98.5) 및 무역관련 이슈 논의 전개

- OECD : 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개최('98.10)

- APEC : 전자상거래 청사진 (APEC blueprint for Action on EC) 채택('98.11)

※ 미국 :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원칙('97.7) 및 제1차 연례보고서('98.11) 발표

○ 국내에서도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안별로는 정통부, 재경부, 특허청 등이 참여

○ '98년까지는 종론적인 접근

## 인터넷 이용자 및 전자상거래 시장 예측

| 구 分 | 인터넷이용자 |         |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|          |
|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| '99    | 2002    | '99        | 2002     |
| 전세계 | 2억명    | 3.4억명   | 2,200억달러   | 7,900억달러 |
| 한 국 | 275만명  | 1,000만명 | 1,500억원    | 37,800억원 |

에 치중하였으나, 「전자상거래기본법」제정('99.1.5)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기본환경이 마련됨에 따라

- '99년도에는 세부분야별로 구체적인 시책을 개발·추진하여 전자상거래 체제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통한 효과 극대화 도모

## II. '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방향

### 정책 목표

- 국가경제·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강력한 추진엔진으로써 국내 전자상거래 수준을 조기에 향상
- 가시적·구체적인 성과도 출로 전자상거래의 잠재성 실증

### 과제 1 전자상거래 촉진을 뒷받침하는 법적 환경 마련

- 전자적 매체를 활용하는 새로운 거래양식의 도입·확산에 적합한 법률체제로의 개편이 시급히 필요
- 전자상거래 촉진을 뒷받침하는 관계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제도적 걸림돌 제거

### ① 「전자거래기본법」제정 ('99.1.5)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

-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
- 암호제품의 사용제한,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방안 등을 규정
-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의 제·개정 추진

-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현행 법령 중 전자상거래 확대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법령 개정(저작권법(문화관광부),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등)
- 전자자금이체법, 전자조달 법률의 정비(재경부) 및 세계상의 지원방안, 소액 수출업자에 대한 관세환급방안 등을 마련하여 관련법령에 반영

### ③ 범정부적인 전자상거래 추진 체제 및 종합계획 마련

- 민·관 합동의 「전자거래정책 협의회(워원장 산자부차관)」를 통한 「전자거래촉진 계획」수립('99.8월)

### 과제 2 수요자 중심의 세부정책 추진으로 수요 창출

- 전자상거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급 초기단계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

### 이 필요

- 전자상거래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기업·소비자와 밀착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초기 수요 창출

- 전자상거래 시장의 80%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: 주요 업종별 전자상거래(CALS/EC)기반 구축

- 개별 기업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자상거래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업종단위의 전자상거래 연계체계 구축

- 기존 주력산업(가전·자동차·조선·철강·석유 등 8개업종)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정보고리로 연결하여 공동구매, 공동판매, 공동 물류, 부품표준화·공용화 유도

- ※ 주력산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(소요예산은 정보화촉진 기금 등 사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2000년부터는 산업기술자금 지원)

- 전자상거래 이슈별 진단 및 문제해결 방안 마련

- 세계지원, 소비자보호, 표준화, 전자화폐, 물류유통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자상거래의 성장 제고

- ※ 핵심적인 10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소요예산은 공기반사업 기술료 활용

# 전자상거래

## ③ 사이버몰(cybermall) 및 무역 거래알선시스템 확충

- 「사이버몰 발전 협의회」를 구성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·공동 물류체계 구축 등의 애로사항 파악·해결
- 인터넷 무역거래 촉진을 위한 무역알선업체 간의 연계 및 육성
- ※ 국내 제품·홍보를 위한 관문사이트(portal site) 구축(수출과 협조)

## 과제 16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 구축

-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접근과 병행하여 관련기술 수준의 향상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
- 전자상거래 성장을 지체시키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활성화 기반 구축

## ①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지원체제 정비

- 산업기술자금(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)에 전자상거래 항목 신설
- 기술수요가 큰 전자상거래 핵심요소기술(암호알고리즘, 전자지불시스템 등)에 우선적으로 지원

## ② 전자상거래 표준 확충

- 전자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전자문서 표준화 지원 확대
- ※ 공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매년 5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2000년도까지 전자문서표준을 300개로 확충('99년 말 현재 200개)
- 전자문서 표준과 통신기술표준(정통부 담당)을 연계할 수 있는 「표준화 협의체」를 구성·운영('99.3월)

## ③ 「전자상거래지원센터(ECRC)」 운영의 내실화

- 기업·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훈련·기술지도·컨설팅 등을 수행('98년 까지 총 10개기관 운영)
- 실무교육·훈련을 강화하고 정기평가를 통한 차등지원('99년 27억원)

## ④ 「한국전자거래진흥원」설립

- 전자거래표준원을 확대개편하여 민간전문기관으로 설립('99.7월)

## ⑤ 인터넷 이용 환경의 고도화

- 정통부와 협의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구축하고 인터넷 통신요금의 인하유도

## 과제 4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제고 및 마인드 확산

- 중소기업·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,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이해 촉진을 통한 이용활성화 도모

## ① 전자상거래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포

- 전자상거래 개념부터 구축·활용까지 전 단계를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제작(1만부)하여 전국에 배포

## ② 우수 사이버몰 포상제도 시행

- 사이버몰 활성화를 위하여 반기별 시상(산자부장관상) 제도 운영
- ※ 전자거래표준원 등 민간기관 주도로 추진하고 우수사이버몰 마크 부여

## ③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

- 10개 전자상거래 지원 센터(ECRC) 공동 주관('99.4월)

## 과제 5 전자상거래 국제협력 강화

-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국제협력과 국제기준(Global

standards)과의 조화가 필요 하므로 2000년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WTO·OECD 등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양자간 협력사업 강화

### ① 다자간 국제기구 논의에 대응

- WTO, OECD, APEC 등 국제기구 논의에 전향적으로 대응
- \* 특히 '99.11월 제3차 WTO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관세 등 무역관련 이슈 논의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

### ② 아시아지역 전자상거래 회의 개최

- 아시아 15개국·ESCAP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협력회의, 세미나·전시회 서울 개최('99. 9. 의장국 : 한국)

### ③ 한·미, 한·일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다른 국가로 확대

## III. 과제별 추진 계획

**고제 1** 전자상거래 촉진을 뒷받침하는 법적 환경 마련

### ■ 배경

-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거래양식의 도입·확산에 적합한 법률체계로의 정비가 시급히 필요
- 전자상거래 촉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지속적으로 제·개정하여 걸림돌 제거

### ■ 추진 과제

- 가. 「전자거래기본법」제정('99.1.5)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
-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
- 불필요한 정부간여가 없도록 하고 민간자율원칙에 따른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
- 주요골자(안)
  - 민간업체에 대한 암호사용 제한기준을 "OECD 암호화정책 지침"에 따라 명확히 규정
  - 전자거래정책협의회 구성·운영
  - 위원장 : 산자부차관, 위원 :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 산·학·연 대표
  -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 조정기구의 운영
  -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하여 권고

### ○ 추진 일정

- '99. 2월 관계부처 협의 및 '99. 3월 입법예고
- '99. 6월말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고 '99. 7. 1일부터 시행

### 나.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의 제·개정 추진

- 현행 법령 중에서 전자상거래 확대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제·개정 촉구
- 「전자자금이체법(재정경제부)」제정
  - 전자자금이체시의 이용자보호 방안, 순해배상 책임, 전자화폐 발행기관 등
- \* 미국의 예 : '78년 "연방자금이체법"을 제정
- 「저작권법(문화관광부)」개정
  - WIPO 저작권조약을 수용하여 디지털송신과 같이 쌍방향성을 가지는 송신에 대한 전송권 개념 도입 등
- 「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(산업자원부)」개정
  -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일정기간 내에는 소비자의 무조건적인 청약철회권(cooling-off) 도입 등
- 정부 조달업무의 전자거래(EDI) 이용 근거 마련

·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재정경제부) 등을 정비하여 정부부문부터 전자거래를 도입하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유도

※ 미국의 예 : “연방조달효율화법(‘94)”을 제정하여 2000년까지 연방조달계약의 75% 이상을 EDI화 추진

-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시책의 제도화 추진
- 전자거래 단계별(설비투자등 준비 - 인터넷 거래·결제 - 제품 배달) 투자세액공제, 기술·인력개발비 공제, 기술개발준비금이 손금삽입 방안 등을 마련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반영추진
- 전자거래 도입에 따른 세원노출 기피를 완화하고 투명성 제고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차원의 부가가치세 경감 추진
- ※ 현행 법률에서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(POS) 도입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경감, 투자세액 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
- 인터넷을 통한 외국과의 거래 촉진과 소자본 창업(SOHO) 활성화를 위하여 소액수출업자에 대한 관세환급방안 검토
- 기타 법인세, 지방세 등의 지원 방안 마련

다. 법정부적인 전자상거래 촉진 체제 및 종합계획 마련

○ 전자거래기본법(제20조)에 따라 법정부적인 「전자거래 촉진계획」수립(‘99.8월)

### ○ 촉진계획의 내용

- 전자상거래 관련 모든 이슈를 포함한 법정부적인 단계별 정부 시책 및 지원정책 등을 마련
- 전자결제, 지적소유권보호, 소비자보호, 개인정보보호, 전자서명 및 인증, 기술개발·표준화, 국제협력, 인프라 구축 등
- 민·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 평가 및 보완

## 주요자 중심의 세부시책 추진으로 수요 창출

### ■ 배경

○ 전자상거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급 초기단계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

○ 전자상거래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기업·소비자와 밀착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초기 수요 창출 및 성장 견인

※ 그 동안의 정부시책인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정부위주의 공급자적 시각에 편향된 면이 있었으며 정책 추진력도 미약

### ■ 추진 과제

가. 기업간 전자상거래(B to B) 활성화

○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업종별 CALS/EC 기반 구축

- 개별 기업차원의 전자상거래 도입 한계를 극복하고 전자상거래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업종단위의 연계체계 구축

○ 주력산업(가전·자동차·조선·철강·섬유 등 8개업종)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정보고리로 연결하여 공동구매, 공동판매, 공동 물류, 부품표준화·공용화 유도

※ 주력산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(소요예산을 정보화촉진기금등 활용하고 2000년부터는 산업기술자금 지원)

※ 외국의 사례

- 일본 : 통산성의 지원하에 JECALS 프로젝트 추진  
- 미국 : 자동차 산업(ANX) 등 주요 업종별 프로젝트 추진 중

### ○ 기대효과

- 업종별 부품 공용화 및 공동구매 등을 통해 연 2,400억원의 비용 절감

- 1조 5,000억원의 물류 및 거래

## 비용의 절감

- 평균 30% 이상의 제품개발기 간 단축
- ※ 동 기대효과는 한국CALS/EC 협회의 자체 조사에 따른 것임

## 나. 전자상거래 이슈별 진단 및 문제해결 방안 마련

- 전자상거래 업체 및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
- 세계지원, 소비자 보호, 표준화, 전자화폐, 물류유통, 표준약관 등 전자상거래 관련 핵심적인 10개 이슈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자상거래의 성장 제고
- ※ 소요예산(약 3억원)은 '99년도 공기반사업 기술료 활용

-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의 정확한 측정 방안 마련 및 장기예측
- 향후 전자상거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

## 다. 사이버몰(cybermall) 및 무역거래알선시스템 확충

- 국내 사이버몰의 활성화 지원
  - 사이버몰 운영자가 참여하는 「사이버몰 발전 협의회」 구성
  -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조건 완화 · 공동 물류체계 구축, 판매

## 물품의 제한 완화 등의 애로

## 사항 파악 · 해결

- ※ 사이버몰 현황 : 미국 45,000여개, 한국 400여개

## ■ 추진 과제

- 가.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지원체제 확충

- 현재의 단편적 기술개발 지원체제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체제로 개편

-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(중기점, 공통핵심기술개발)의 세부 사업 내용에 전자상거래 항목 신설
- 기술수요가 큰 전자상거래 핵심요소기술(암호알고리즘, 전자지불시스템 등)에 우선적으로 지원

- 업종별 CALS/EC, CALS 표준화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확충

## 나. 전자상거래 표준 확충

- 전자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전자문서 표준화 지원 확대
- 국제표준화(UN/EDIFACT)을 기초로 하여 매년 50종 이상의 표준 전자문서를 개발

- 중점분야 : 유통, 조달, 업종별 표준전자문서 등
- ※ 공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매년 5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2000년도까지 전자문서표준을 300개 이상으로 확충('98년말 현재 200개)

- 「전자상거래 표준화 협의체」

구성 · 운영('99.3월)

- 전자문서 표준 · 정보기술표준(산자부담당)과 통신기술표준(정통부담당)을 연계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국가적인 전자상거래 표준화 체제 구축
- 산자부, 정통부, 기술품질원 등 정부부처와 전자거래표준원, 한국전산원, 정보보호센터 등 참여

다. 「전자상거래지원센터(ECRC)」운영의 내실화

- 기업 ·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훈련 · 기술지도 · 컨설팅 등을 수행하여 전국적인 전자상거래 촉진거점으로 활용
- ※ 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생 산성본부, 무역정보통신 등 총 10개기관 운영중
- ※ 미국의 예 : 전국 16개 지역에 ECRC 운영
- 실용성 있는 실무교육 · 훈련을 강화하고 공통교재 개발 등 지원센터간 정보교류 및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예산의 차등지원 추진('99년 27억 원)

- '99년도 사업 목표

- 교육훈련 : 1만명, 컨설팅 : 500개사,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: 2만건
- 업종별 CALS/EC, 공공 조달 부문의 EDI와 연계

라. 「한국전자거래진흥원」설립

- 현 전자거래표준원과 유사기관을 통합하여 전자상거래 분야 민간전문기관으로 설립 ('99.7월)

- 기능 : 전자상거래 Think-tank로 운영
- 전자상거래 표준개발 및 국제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가
- 전자상거래 법제도 연구 및 보급 · 홍보 · 진흥사업 등

마. 인터넷 이용 환경의 고도화

-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전자상거래의 물리적 기반인 정보고속도로(초고속정보통신망)의 조기 구축 및 고도화
- 광케이블, 케이블TV망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인 가입자망 구축

(단위 : 천원/월, 환율 : 1,400/1 US\$)

| 회선속도       | 미국(IDT사) | 한국(KT) | 비율(%)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56 Kbps    | 490      | 796    | 162   |
| 256 Kbps   | 980      | 1,462  | 149   |
| 1,544 Mbps | 1,260    | 3,636  | 289   |

※ 특히 기업간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하여 기업이 사용하는 인터넷망을 우선적으로 고도화 추진

-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통신요금의 지속적인 인하 유도

※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요금이 선진국 대비 150~289% 수준(왼쪽 아래 표 참조)

※ 정보통신진흥협회 등 민간기관의 전자상거래 실태조사에서도 '과도한 통신사용료'를 전자상거래 사용자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

#### 제4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하고 및 마인드 확산

##### ■ 배경

- 아직까지 기업, 특히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므로,
-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이해 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이용 활성화 도모

##### ■ 추진 과제

- 가. 전자상거래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포('99.3월)
- 전자상거래 개념부터 구축 ·

부산상공회의소, 광주·전  
라 : 광주광역정보센터

### 고객 15 전자상거래 국제협력 강화

준원 등 민간기관 주도로 추진

- 선정된 사이버몰 업체에게 정부 지원사업의 우선 참여, 각종 포상시 가점부여 등의 우대조치 마련

#### ○ 기대효과

-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형성 및 참여 증대로 시장 확대

- 국내 사이버몰 수준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저변 확대

#### ※ 외국의 사례

• 미국 : 비영리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TRUST-e 마크제도 시행

• 유럽 : 민간주도로 Hall 마크 제도 운영

• 일본 : '97년부터 민간연구회 중심의 "온라인 쇼핑 대상(OLS)" 제도 실시

#### ■ 배경

○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제 협력의 강화와 국내 제도와 국제기준(global standards)과의 조화가 요구됨

- 특히, 2000년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WTO·OECD 등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자간 협력사업 강화

#### ■ 추진 과제

##### 가. 다자간 국제기구 논의에 대응

○ WTO, OECD, APEC 등 국제기구 논의에 전향적으로 대응

※ '99년도에는 WTO 논의가 가장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됨

이에, '99.11월 제3차 WTO 각료 회의에 대비하여 관세 등 무역 관련 이슈 논의에 대한 대응전략을 '99.8월까지 마련

##### 나. 아시아지역 전자상거래 회의 개최

활용까지 전 단계를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제작(1만부)  
하여 전국에 배포

- 기업 및 소비자들의 마인드 제고로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의 참여를 통한 활성화 도모

#### 나. 우수 사이버몰 포상제도 시행

##### ○ 추진 배경

- 전자상거래 확대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(비대면 거래로 인한 사이버몰에서 판매되는 상품·정보에 대한 신뢰부족, 개인정보의 누출 등)을 최소화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

※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조사('98.12월) 결과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 확대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'사이버몰에서 판매되는 상품·정보에 대한 신뢰부족'을 지적(자료 : '98 전자상거래 현황 및 환경조사 결과 보고서)

##### ○ 사업 내용

-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우수 사이버몰 마크제도 도입
- 마크를 부여받은 사이버몰 중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시상(연 2회)
- 모든 사업은 한국전자거래표

○ 전국 10개 전자상거래지원센터(ECRC) 공동 주관으로 주요 도시 순회 설명회 개최('99.4월)

-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전국적인 홍보

※ 서울 : 중진공, 생산성본부 등 5개기관, 대전·충청 : 대전상공회의소, 대구·경북 : 대구상공회의소, 부산·경남

- 아시아 15개국·ESCAP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협력회의(AFACT) 및 기술 전시회(EDICOM '99)를 서울에서 개최

- 기간 : '99.9.6~11일(6일간), COEX 및 교육문화회관
- 행사내용 : 아시아국가 대표 간의 전자상거래 협력 모색 및 아시아 최대규모의 세미나·전시회

#### 다. 한·미, 한·일 등 다른 국가와의 전자상거래 협력사업 추진

- 한·미 전자상거래 협력
  - 한·미 전자상거래 공동성명 ('98.11월) 후속조치 차원에서 한미 기업협력위원회(CBC) 산하의 전자상거래 작업반을 활용
  - 제2차 CBC 회의('99년 상반기 예정)시 양국간 Action Plan 교환

#### ○ 한·일 전자상거래 협력

- 「한일 EC추진 협의회」구성 및 회의 개최(1차회의 '99.4월 일본)
- 전자업종 전자상거래, 인증제도, 인터넷 티켓판매 등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
- ※ '99.1월 양국 전문가 Workshop 을 통하여 협의회 구성 및

#### 협력사업 합의

#### 참고자료

#### 1. 전자상거래의 파급효과

##### 가.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효과 (미국의 사례)

-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정보기술 산업이 미국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

- GDP 성장 : 3년('95~'97)간의 실질경제성장(GDP)의 1/3 이상(34.6%)을 기여
- 인플레이션 하락('97) : 3.1% → 2.0%
- 정보기술분야 기업설비투자의 증가 : 총 설비투자액의 3%(60년대) → 45% 이상 차지('97년)
- 고용 창출 : 7백만명 이상이 정보기술산업에 종사

##### ○ 전자상거래 성공사례

- 온라인 전자서점 Amazon의 급성장
  - 연간 매출액 : 1,600만달러('96년) → 1억4,800만달러('97년)
  - '98년말 주식총가치는 101억달러로 미국 최대서점인 Barnes & Noble의 4배

- 주요기업의 인터넷 매출액 증가 추이

· Cisco사 : 1억불/년('96년) → 32억불/년('97년) → 1억불/주('98년)

· Dell컴퓨터사 : 1백만달러 미만/년('96년) → 6백만달러/일('97년)

· Auto-By-Tel사 : 18억달러/년('96년) → 5억달러/월('97년)

- 인터넷을 통한 연말선물 판매

· 미국 가정의 약 10%('97년) → 약 40%이상('98년)

※ 자료 : "The Emerging Digital Economy('98.4)", "U.S. Government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1st Annual Report('98.11)"

##### 나. 기업간의 전자상거래 (B to B) 성장요인

##### ○ 구매비용의 감소

- EDI를 활용할 경우 5~10%의 조달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,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감소폭 확대

※ GE의 사례 : 온라인구매시스템을 통해 구매부서의 인건비 30% 절감, 원·부자재비용 20% 인하(향후 3년동안 5~7억달러의 비용절감 예상)

- 재고 감소
  - 재고수준의 적정 유통으로 서비스 향상 및 운영비용 감소
  - ※ IBM의 사례 : '96년 부서간 전자적인 정보교환과 신속한 처리로 재고회전율 40% 증대 및 판매량 30% 증가
  
- 제품생산기간(cycle time)의 단축
  -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정보교류 확대로 생산소요시간을 단축
  - ※ 미국 자동차업계의 사례 : 새로운 모델 개발에서 대량 생산까지 4~6년('80년대) → 30개월
  
- 고객서비스의 향상
  - 자원 및 시간의 절약으로 보다 양질의 고객서비스 가능
  - ※ Cisco의 사례 : 고객서비스 생산성 200% 증가 및 1억 2,500만달러 이상이 고객서비스 비용 절감
  
-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의 감소
  -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고 판매·홍보 조직의 효율화로 인한 이익 창출
  - ※ Boeing의 사례 : 인터넷 주문 처리를 통해 소비자 문의전화가 하루 600건 감소하고 주문량 20% 증가
  
- 새로운 판매기회 확대
  -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시간적·공간적인 제약을 극복
  - ※ Dell의 사례 : Dell 고객중 80%가 Dell web site 이용전에는 Dell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없었음
  
- 국민대우, 관세 등
  - 상품교역이사회 : 시장접근, 표준, 통관절차, 원산지 등
  - 지적재산권이사회 : TRIPs협정과 관련하여 저작권·상표권 보호, 신기술과 기술에의 접근 등
  - 무역개발위원회 : 개도국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, 개도국의 참여 증진, 인프라 접근과 기술이전 등
  - ※ 당초에는 정부조달위원회 및 정부조달 투명성사업반의 작업프로그램도 논의되었으나 삭제함
  
- 향후 동향
  - '99.3월 말 이전에 중간 점검회의를 갖고 산하 이사회는 작업결과를 '99.7월 말까지 일반 이사회에 보고
  - '99.11월 제3차 각료회의에서 전반적인 검토
  
- WTO
  - 제2차 WTO각료회의('98.5월)에서 「전자상거래 선언문」 채택
    -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'99년 말까지 유지
    - 모든 무역관련 이슈(all trade related issues)를 검토하는 포괄적인 작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3차 각료회의에 보고
  -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 합의
    - 일반이사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산하 이사회별 작업 이슈를 확정
  
- OECD
  - 전자상거래 장애 제거를 위한 회의('97.11월 핀란드 트루크),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('98.10월, 캐나다 오타와) 등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
  -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결과
    - 전자상거래 조세에 대한 보고서, 3개의 각료선언 및 Action

Plan 등을 채택하여 향후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
- 전자상거래 조세 보고서 : 전자상거래 조세원칙(중립성, 효율성, 명확성 등)을 제시하고 소비자국과 세원칙을 명시
- 소비자 보호 각료선언 : 전통적 상거래와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보호 지침을 '99년 말까지 제정
- 사생활 보호 각료선언 : 사생활보호 지침('80)상의 원칙을 전자상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
- 인증에 대한 각료선언 : 국제적으로 조화된 적절한 인증제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UNCITRAL 모델법에 기초한 제도 정비

- 재정위원회, 정보컴퓨터통신 위원회, 무역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별로 각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논의 예정

#### ■ APEC

- '98.11월 정상회의에서 「전자상거래 청사진 (APEC Blueprint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)」 채택
- '97년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전자상거래 Task Force를 구성('98.2월)하여 4차례의 회의 개최

#### ○ APEC 전자상거래 청사진

- APEC 차원의 전자상거래 논의를 정리하고 활동비전을 제시
- 민간·정부의 역할 : 민간은 기술, 서비스 개발 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법제도적 환경 마련, 신뢰증진, 국제 협력, 선도적 역할 등을 담당
- 시범적인 작업 프로그램 추진 : 사례연구 확대, 전자상거래 측정지표 개발, 금융적 측면의 작업, 경제기술협력 강화, 전자인증 실현 등
- 가상 전자상거래 멀티미디어 지원 체계 개발 :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개발 전략, 인력자원 개발,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련 정보 교환
- 종이없는(paperless) 무역실현 : 선진국은 2005년까지 개도국은 2010년까지
- Y2K에 대응 : '99년 상반기중 "지역 긴급계획 전문가회의" 개최

#### ○ 향후 동향

- 전자상거래 청사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가상 운영 그룹(virtual steering group) 구성
- 논의 진전사항을 연 1회 고위 간부회의(SOM)에 보고

#### ■ UNCITRAL

- 전자상거래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적 측면을 검토하여 개별 국가에서 관련 입법시 참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
- 전자상거래 모델법('96년) 제정  
※ 동 모델법은 우리나라(전자거래기본법)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수용
- 현재는 전자서명, 인증기관, 인증서 등에 대한 「전자서명에 관한 통일규칙」을 제정 중  
※ '98.6월 제33차 UNCITRAL 전자상거래 작업반 회의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모델법에 기초한 국제협정(International convention)을 제안한 바 있음

#### 나. 양자 논의 동향

#### ○ 양자간의 전자상거래 공동성명 또는 보고서 채택

- 미·네덜란드('97.10월), 미·EU('97.12월), 미·일('98.5월), 미·프랑스('98.6월), 미·아일랜드('98.9월), 한국·미('98.11월)

#### ○ 미국-EU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논쟁

- 미국은 민간 자율규제, EU는 법적 보호장치를 선호
  - EU는 구속력이 있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제정('95.10월) 하여 '98.10.25일부터 시행
  - EU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가(미국이 대표적으로 해당됨)에 대해서는 EU로부터 상업적 목적의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
  - ※ 아직까지 EU회원국 중에서 미국으로의 정보교류중단을 밝힌 국가는 없음
  - ※ 15개 회원국은 동 지침을 국내 입법화한 국가는 벨기에, 그리스, 이태리, 영국, 포루투갈, 스웨덴 등 6개국에 불과
  - 미국은 EU의 지침 시행이 전자상거래 촉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EU측과 협상을 진행
  - 현재까지 정보당사자의 열람 요구권, 피해보상 처리방식 등에 대하여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, '99.6월 개최될 미·EU 정상회의 전까지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키로 함
- \* 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법률**
- 인터넷과 세자유법(Internet Tax Freedom Act) : 3년동안 한 시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과세를 유예
  - 디지털저작권법(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) : WIPO 조약의 이행과 온라인상에서 미국의 지재권 보호
  - 어린이사생활보호법(Children'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) : 13세이하 어린이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보모의 동의를 얻도록 함
  - 정부문서감축법(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) : 정부내의 전자문서 사용, 보관 및 전자서명 인정
  - 차세대인터넷연구법(Next Generation Internet Research Act) : 대학과 협력하여 현재보다 1,000배 빠른 인터넷 개발